

# 이천시 부발달집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

소관부서 : 관광과

제정 2026· 2· 27 조례 제2347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달집태우기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이천시 부발달집축제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** ① 이천시 부발달집축제(이하 “축제”라 한다)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천시 부발달집축제 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축제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수립
2. 축제 활성화 및 홍보 방안
3. 축제 사후평가 및 예산 결산
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3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,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, 부위원장 및 사무국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부발읍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부발읍 지역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이천시 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
④ 위원회에는 축제의 실무업무 추진에 필요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

**제4조(임기)**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위촉 해제된 때에는 후임 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**제5조(위촉 해제)**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이천시 부발달집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

1.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2.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
3.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**제6조(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7조(회의)** ① 위원회 회의는 축제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8조(수당 등)**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9조(축제의 지원)**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「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축제기간 중 축제에 참가하는 관람객의 이동 편의 제공과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 순환버스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.

**제10조(평가보고회)** 위원회는 축제 종료 후 60일 이내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, 개선 사항을 다음 연도 축제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준용)**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「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서 정한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.